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년 7월 31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이 민 지 (인) 외 17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민지
건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7년 7월 30일
<p style="margin-left: 20px;">소개의견</p> <p>청원인 이민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 15회 정기회의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2017년 7월, 제 15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은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제 5조, 제 25조, 제 37조, 제 39조에 명시된 직장 내 성희롱 범죄에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미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점점 늘어나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본 개정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p>	

# 청원서

## 1. 제안이유

최근 호식이 두 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s카드회사 사건, k항공사 사건 등 사업장 내 수직관계에서 나온 권력차이로 인해 성희롱 사건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근로자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성적행태로서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심각하며,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78.4%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직장 내 근로자들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조치(신고 등)를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 행위가 직장 내 자율적 해결로 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를 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자 심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불이익 조치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3명 중 57%에 달하는 58명이 성희롱 문제 제기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34%였던 201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이익 조치로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과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각각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가 29.3%로 나타났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신설됐지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내부 징계 수위는 오롯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이 되고,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처벌은 과태료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가해자에게 사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정부 위원회를 조성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 2. 주요골자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신설>

⑤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⑥ 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

제39조 (과태료) - 삭제

<신설>

제39조(과태료)

④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도록 한다.

1.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위원회 구성은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한다.
  - 나.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한다.
  - 다. 위원회는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구문 대조표

<p>제37조(벌칙)</p> <p>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2.2.1.&gt;</p> <p>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p>	<p>&lt;신설&gt;</p> <p>⑤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⑥ 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	---

<p>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u>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u>」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u>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u>  [전문개정 2007.12.21.]</p>
<p>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2.2.1.&gt;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삭제</p>
<p>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p>	<p>&lt;신설&gt;  제39조(과태료)  ④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u>국가적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u>  2.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원회 구성은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한다.  나.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는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